

# 가정통신문



성원고등학교  
교무 23-009

전북 남원시 대복사길 41

<http://seongwon.hs.kr>

Tel 063)633-8582  
Fax 063)631-2732

## 2023학년도 학생 봉사활동 안내 및 실적인정 기준 알림

### ※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절차 안내 ※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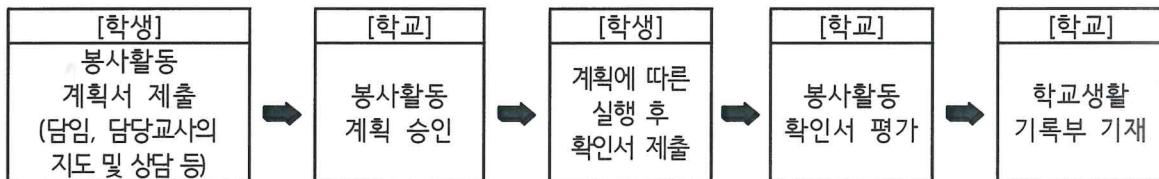
#### 1. 개인 봉사활동 흐름도

##### 1)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간

- 학생 봉사활동의 이수시간은 학교교육계획(정규교육과정, 수업시간 외)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3년간 27시간 이상 학교 상황에 맞게 자율 실시하되,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권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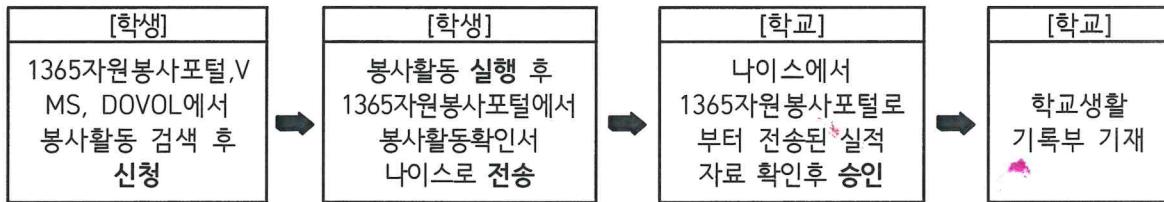
##### 2)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(1365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)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

- 사전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추천(허가) 한 경우에만 봉사활동 실적으로 인정



##### 3) 봉사활동 실적 연계사이트(1365자원봉사포털, VMS, DOVOL)를 이용하는 경우

- 학생은 봉사활동계획서 및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할 필요는 없으나, 실시 전 담당(담임)교사와 사전 상담을 실시하여 인정 가능 기관 및 활동인지 반드시 확인 필요



##### 4) 학생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

- 자원봉사활동의 기본 방향(무보수성, 자발성, 공익성, 비영리성, 비정파성, 비종파성)에 부합하는 기관

공공부문	행정기관, 공공기관, 공공시설
민간부문	공익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, 법인

- 인정 불가 기관 :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(단체), 종교적·정치적 목적이나 소속 회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(단체), 공익 목적에 위배되는 기관이나 단체
- 봉사활동 인정 가능 기관이라 할지라도 봉사활동 내용, 영역, 안전 등에서 학생 봉사활동 취지에 벗어나면 인정 불가

##### 5) 봉사활동 시간 인정 기준의 기본 원칙

- 봉사활동 시간은 1일 8시간 이내 인정이 원칙 (당일 수업시수 + 봉사시간 = 8시간 이내)

(7교시인 경우 1시간, 6교시인 경우 2시간, 4교시인 경우 4시간, 휴업일(토요일·공휴일·방학·재량휴업일) 인